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- 4호

「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”에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“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”를 신설(안 제3조제12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[www. sangjucouncil.go.kr](http://www.sangjucouncil.go.kr)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